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2. 19 선고 2017가합6388 판결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설현

담당변호사 김도희, 정수인

피 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광재

변론 종결 2019. 1. 24.

판결 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9년경 피고에게 입회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E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회원(회원번호: F)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2016. 6. 30. D로부터 위 회원자격을 양수하였다.

나. G은 2003년경 피고에게 입회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회원번호: H)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6. 10. 14. G으로부터 위 회원자격을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증을 발급바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피고가 예치받아 5년간 거치하고, 회원의 탈회요구가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금만을 반환하며 탈회요구가 없을 시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제15조(회원자격의 양도)

1. 정회원의 자격 및 권리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하에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회원의 자격 및 권리를 새로이 취득한다.

2. 회원권의 양도 또는 명의 변경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회)

1. 회원은 회원권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1개월 전에 탈회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탈회신청 의사가 없을시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한다(양도, 양수도 포함).

2. 탈회하고자 할 때는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존 회원인 D, G의 각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에 서 탈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입회금 150,000,000원, 원고 B에게 입회금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회원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칙 제9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회칙 제15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피고로부터 회원권을 발급받아야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

기존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은 자는 이 사건 골프클럽에 새로이 가입했다기보다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것으로서 기존 회원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 ·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은 3.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인 D와 G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양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회원권을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D와 G의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회원자격을 그대로 승계취득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 양수에 피고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회원자격을 양수하려는 자가 약관에 미리 명시한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회원자격의 양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17조 제2호 다목).

이 사건 회칙 제15조에서 회원자격은 피고의 승인 하에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회원자격의 양도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양수함에 있어 피고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탈회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않았으므로,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기존 회원인 D와 G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반환 요청이 없어 5년간 회원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회원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아직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회원증을 제출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회칙 제15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들의 탈회신청은 부적법하다.

2) 입회금 거치기간의 가산점이 회원권 양도시로 변경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칙에서 회원권의 양도와 탈회를 구분지어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에게 부여한 회원번호가 기존 회원들의 회원번호와 동일한 점, ③ 기존 회원들이 계속하여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회칙에 따라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원고들이 기존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이용하던 중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 양도 당시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두 가지 경우에 피고가 지는 부담도 동일한 점,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회원으로 승인한 무렵에 그와 같은 회원모집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에 새로이 가입했다기보다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것으로서 기존 회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회원자격 존속기간 또는 입회금의 거치기간은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갱신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회칙 제10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에서 입회금은 피고에 5년간 거치하고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탈회신청이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회칙은 이 사건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피고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들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약관법 제9조

제6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칙 중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지의 위 조항은 약관법 제9조 제6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약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고객의 그러한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인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자동갱신을 인정한다면 고객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 동안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계약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

(2) 이 사건 회칙에서 입회기간의 종료예고 절차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의제기 기간을 입회기간인 5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기간인 1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3) 회원들은 위 1개월의 기간 내에 미처 입회금의 반환 등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입회계약이 자동갱신되어 무려 5년 동안 이 사건 계약의 유지를 강요받고 그 기간 동안 입회금을 이자도 없이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4) 민법상 임대차, 고용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대한 묵시의 갱신 관련 조항(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에 따르더라도 종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입회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탈회신청 절차가 부적법한지 여부

가) 이 사건 회칙 제15조 제2항은 회원이 탈회하고자 하는 경우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피고에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로 하여금 회원임을 간이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한 편의상 절차에 불과하여 회원임을 증명한 이상 회사는 회원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탈회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각각 기존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양수한 이후 피고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회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회원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탈회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회칙이 약관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① 이 사건 회칙중 탈회 승인에 관한 규정은 문리해석상 입회 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회원은 언제든지 탈회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가 임의로 탈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볼 것인 점(약관법 제6조), ② 또한 피고의 승인 여부에 따라 피고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입회금의 반환시점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으로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인 점(약관법 제10조 제2호, 제11조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승인이 없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탈회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회원권 양수 및 입회금 반환청구가 탈법행위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기존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회원자격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골프클럽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판결 선고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피고는 이 사건 회칙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다(대법원 2005. 2. 17. 선고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의 주장들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판사 이화연, 판사 고철만